

제2회

1. ③ ㉞은 옳고, ㉟, ㊱은 옳지 않다. 사이먼(Simon)은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내용적 합리성이 인간의 인지능력상의 한계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(㉟). 디싱(Diesing)은 기술적 합리성, 경제적 합리성, 정치적 합리성, 사회적 합리성, 법적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합리성이란 사회 내 여러 세력들의 갈등이 해결되고 조화 있는 통합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(㊱).

2. ③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, 구역을 변경할 때(경계변경 제외), 명칭을 변경할 때(한자명칭 변경 포함)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①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소청심사는 일반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·결정할 수 있다.

4. ④ ㉞, ㊱은 옳고, ㉟, ㊱은 옳지 않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예산의 심의,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(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제①항). 따라서 예산의 심의,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(㉞).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(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제④항)(㊱).

<<오답정리>>

- ㉟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㊱ 주민참여예산에 의해 수립된 주민의 의견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지방의회의 심의의 대상이 된다.

5.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 심층평가한다.

6. ② 합리목표모형은 과업지향 문화를 지향하며,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한다. 모험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모형은 혁신지향 문화를 지향하는 개방체제모형이다.

<<핵심체크>> 퀸과 김벌리(Quinn & Kimberly)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

구분	외부	내부
유통성	혁신지향 문화(발전문화) <개방체제모형>	관계지향 문화(집단문화) <인간관계모형>
	변화지향성, 신축적 대응성, 도전의식, 모험성, 창의성, 자원획득 등	구성원 간 신뢰와 공유가치, 사기, 응집성, 팀워크(단결과 협동), 참여적 의사결정 등
통제	과업지향 문화(합리문화) <합리목표모형>	위계지향 문화(위계문화) <내부과정모형>
	외부관점에서 경쟁력, 성과 통제관점에서 효율성·능률성 등	공식적인 규정(표준화), 명령과 통제, 보고 및 정보관리, 분명한 책임관계 등

7. ④ 일선관료는 인적, 물적 자원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해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집행이나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법집행을 보인다.

<<오답정리>>

- ① 일선관료는 정형화하기 곤란한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지닌다.
- ② 일선관료가 처한 업무상황은 다양하고 복잡하며, 일선관료에 대한 목표 기대는 모호하고 갈등적이다.
- ③ 일선관료의 업무는 경계와 분할이 불명확하여 업무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.

8. ④ ㉟, ㉞, ㊱, ㊱은 모두 옳지 않다. 오스본(Osborne)과 게블러(Gaebler)의 기업가적 정부는 사고수습이 아닌 사고예방(예방적 정부-㉟), 정부관료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에 권한부여(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-㉞), 투입이 아닌 결과 중시(결과지향적 정부-㊱), 관료제가 아닌 고객의 편의 중시(고객지향적 정부-㊱)를 지향한다.

9. ②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성 있는 선호를 전제로 한다.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참여자 중에는 스스로 자신이 선호하는 것조차 모른 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

10. ④ 이해충돌회피제도는 자기심판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, 행정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.